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식량자급율과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함(안 제3조)
- 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하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함(안 제4조)
- 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등 지원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을 지급받은 학교장 등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며, 지원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해야 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7조)
- 마. 시장, 군수·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실비변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6조)
- 사.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성 및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전화 032-440-6184, 팩스 032-440-87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식량자급율과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무상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4.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과 이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6.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산물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사.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가 인정한 식재료

7. "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2장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2.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3.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 지원
 4. 지역의 식량자급율과 친환경·유기농 생산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생산, 계약재배와 수급
 5.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의 지도·감독
 6. 급식지원센터 시설 등 지원방안
 7. 급식지원을 위한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
 8.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급식지원
 9.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해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군수·구청장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알려야 하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단, 현물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② 시장은 인천지역 생산 친환경식재료, 인천지역 생산 우수식재료, 인근지역 친환경식재료, 인근지역 우수식재료 순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 식재료의 품목 및 공급방식 결정, 지원범위 및 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운영 등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이하“학교장 등”이라 한다)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군수·구청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급식경비 지원신청의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을 지급받은 학교장 등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며,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아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은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의 사용내역을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의 사용내역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장 등은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급식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 군수·구청장 등은 급식경비를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 등의 장에게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및 지원현물의 지급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9조(설치·운영)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 행정부시장 및 급식업무 담당 국장
2. 시 교육청 급식업무 담당 국장
3. 시의회 추천 시의원
4. 군수·구청장 협의회 추천인
5. 인천학교영양(교)사회 추천인
6. 학부모단체 추천인
7.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8.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 단체 추천인

9.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0.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1. 급식관련 전문가

12. 급식지원센터의 장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전반기, 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에 따라 간사 및 서기를 각 2명씩 둔다.

② 간사는 시 교육지원담당관과 농축산유통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고, 서기는 교육지원담당 사무관과 농축산유통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를 보조한다.

1. 교육지원담당관 간사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예산확보 및 집행과 회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무를 총괄 담당한다.
2. 농축산유통과장 간사는 친환경무상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공급 등에 관한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실비변상)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식재료 품목 내역
3. 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과 식생활 습관 개선사업의 지원
4. 학교급식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과 그 부대시설 설치·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급식지원센터

제17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2. 친환경 식재료 등의 생산자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3.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4. 친환경 농산물 등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5. 시교육청과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홍보 지원
6.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 분석 및 성과 평가
7.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학교 등과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친환경식자재 등의 가공시설, 가공공장,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교육시설, 연구소 등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 산하에 권역별 또는 군·구별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는 운영현황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제18조(급식지원센터의 구성) ①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집행부서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급식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 관계공무원
2. 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3. 시의회 추천의원
4. 군·구 급식지원센터 협의회 추천인
5. 인천영양(교)사회 추천인
6. 친환경농업인단체 추천인
7.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9. 급식관련 전문가
10. 학부모 단체 추천인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장이 되며 급식지원센터를 총괄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4조(학교급식대상) ○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제8조(경비부담 등) ○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제10조(식재료) ○ 제11조(영양관리) ○ 제12조(위생·안전관리) ○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 제14조(영양상담) ○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정의) ○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 유아교육법 ○ 제7조(유치원의 구분)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 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

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비용은 구체적으로 비용 적용을
확정할 수 없어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될 수 있음.

4. 작 성 자

-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